

부천시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7. 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종욱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에 도덕성을 견비하고 개혁추진력이 있는 인사 및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다수의 인사들을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고 이에 따른 고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위원 증원(안 제3조제1항)
 - 현행 : 50인 이내
 - 개정 : 50인 내외
- 고문을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자 5인 정수조문 삭제(안 제3조제4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위원수가 50인 내외라는 것은 인원수의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?	○ 5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있고 상부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정하는 것이며, 경기도 조례도 100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.

<p>○ 위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당이 수반되는 것입니까?</p>	<p>○ 본 위원회는 의결을 요하는 조직이 아니며 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</p> <p>○ 그렇습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지난 66회 임시회 때 심사시 다음에 개정안을 50인 내외로 하기로 했기에 이번에 50인 내외로 안이 상정되었음
- 또한 건국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려는 의도로 보아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봄

나. 반대토론

- 50인 내외는 위원수 한계가 불분명하고 인원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수당도 증액되어야 함
- 50인 내외가 몇 명인지에 대한 질의시 답변도 불분명했음
- 따라서 60인 이내로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5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 참조

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168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7. 6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개정하여 위원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안은,
- 50인 내외는 위원수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또 위원수가 과다하게 증원될 경우 이에 따른 위원수당도 같이 증액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수를 최고 60인 이내로 한정하여 과다하게 증원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회 위원수를 50인 내외로 정한 개정안을 60인 이내로 수정함.

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(구성) 제1항중 "50인 내외의"를 "60인 이내의"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(구성) ①.....50인 내외의.....	제3조(구성) ①.....60인 이내의.....
②~③(생략)	②~③(현행과 같음)	②~③(개정안과 같음)
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.	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.	④(개정안과 같음)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"50인 이내의"를 "60인 이내의"로 하고, 동조제4항중 "5인 이내의"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